적합성확인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

2025. 4



목차

□. 제도 개요1
① 배경 및 목적
② 적합성확인 개요1
Ⅱ. 절차 및 방법4
① 업무처리절차4
② 검토방법 5
〈 업종별 서류 작성 예시 > 8
[자료1] 폐기물 처분업9
[자료2] 폐기물 재활용업 22
[서식3] 폐기물 수집운반업36

Ⅰ. 제도 개요

1 배경 및 목적

□배경

-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"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제도" 도입('20.5.27. 시행)
- 폐기물처리업자는 유효기간(5년)이 경과할 때마다 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며, 유효기간은 운영 관리 측면을 고려 분기별로 조정(시행령 별표 5의3)

허가일		적합성 확인 유효기간	
'08년 이전 허가	1.1~6.30	2025.7.1까지	
	7.1~9.30	2025.10.1까지	
	10.1~12.31	2026.1.1까지	

^{*} 유효기간 중 행정처분이나 벌금형 이상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2년 연장

□ 목 적

 적합성확인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체 제출 서류의 작성방법, 세부 검토 기준 등 공통된 가이드라인 마려

2 적합성확인 개요

□ 적합성확인 대상 : 폐기물처리업자

○「폐기물관리법」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·운반업, 폐기물 중간처분업, 폐기물 최종처분업, 폐기물 종합처분업,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, 폐기물 최종재활용업,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

□ 적합성 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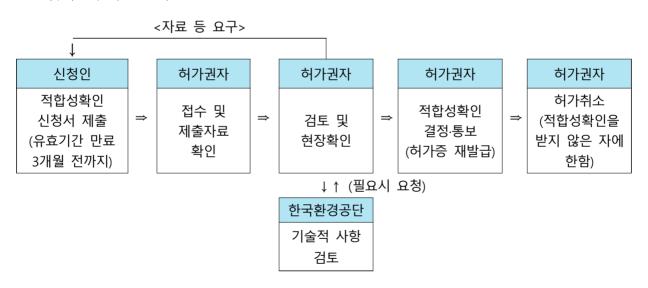
-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**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** 충족*, 처리업체 **결격사유** 미해당,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책임 이행 등
 - 시설·장비의 적합성, 처분 또는 재활용공정 적정성 등 기술적 검토사항은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(한국환경공단)에 검토 의뢰

<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요건 >

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3	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
1.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 및	가. <u>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</u>
준수사항 충족 등 <u><환경부령> 조건</u> 을 충족	매립하지 않을 것
2. 폐기물처리업 <u>결격사유</u> 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	나.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<u>시설·장비</u>
3.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<u>법적 책임을</u>	<u>및 기술능력과 관련한 폐기물처</u>
모두 이행하였을 것	<u>리업 허가기준을 충족</u> 할 것

□ 적합성확인 절차

ㅇ 업무처리 절차



○ 제출서류(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10 제2항)

구분	제출서류
폐기물 처분업	•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 •시설 및 장비 명세서 •기술능력의 보유 현황

	·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		
	·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		
	·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		
	・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・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		
	·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		
	·시설 및 장비 명세서		
	·기술능력의 보유 현황		
	·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		
레기묘 제하이어	·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		
폐기물 재활용업	※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,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·보조기 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		
	·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		
	·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·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		

□ 벌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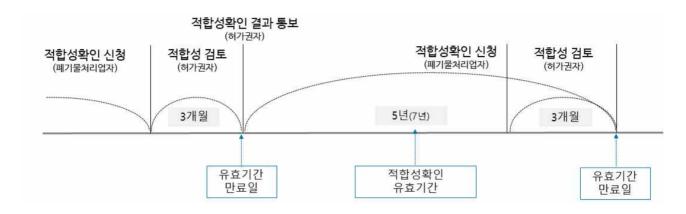
구분	대상	처분내역
행정처분 (법 제27조)	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확인을 받은 경우	허가취소
벌칙 (법 제64조)	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확인을 받은 자	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Ⅱ. 절차 및 방법

※「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 "VII.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"참조

1 업무처리절차

□ 업무 일정



-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새로운 유효기간은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함
 - ※ 허가기관이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검토를 완료하여 결과를 통보하거나 서류 보완이나 검토가 지연되어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결과를 통보한 경우에도 새로운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이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임

□ 서류 보완

- 허가권자는 추가자료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처리업자에게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요청하며, 그 외 보완절차와 방법 등은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를 참조하여 처리
 - ※ 민원인은 보완기간 연장 요청을 2회까지 가능,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보완을 요구
- 허가권자는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적합성확인 결과 통보가 어려운 경우,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 폐기물처리업자가 계속 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

□ 결과 통보

- 적합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한 경우 : 허가증에 적합성확인 결과와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교부
- 적합성을 갖추지 못하거나 적합성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: 허가증에 적합성확인 결과와 사유 기재*, 허가 취소 조치
 - * 적합성확인 신청서 및 허가증 미제출 시 허가증 기재 생략 가능
 - ※ 허가 취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, 청문 등을 거쳐 조치

2 검토 방법

□ 적합성확인 검토사항

- ①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
 - 가)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
 - -시행령 제7조(폐기물의 처리기준 등) 제1항제9호, 제10호
 - -규칙 별표 5(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) 중 매립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사항
 - 나)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
 - -규칙 별표 7(폐기물처리업의 시설·장비·기술능력의 기준)
 - -규칙 별표 9(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기준)

②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
-법 제26조(결격 사유), 시행령 제10조의4(결격 사유), 규칙 제34조의12(결격 사유)

❸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을 모두 이행하였을 것

- -법 제13조의5제5항(유해성기준 위반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회수, 파기 등)
- -법 제28조(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납부)
- -법 제31조제4항(시설 개선명령), 제5항(폐쇄명령), 제7항(측정명령, 조사명령)
- -법 제33조제1항(양수·인수 허가), 제2항(합병·분할 허가), 제3항(상속인 권리·의 무 승계신고)
- -법 제39조의3, 제40조제2항·제3항(폐기물 처리명령)
- -법 제47조의2(반입정지명령)
- -법 제48조(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,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조치명령)
- -법 제48조의5(부적정처리이익 과징금 납부)
- -법 제49조제1항(대집행 비용 납부)
- ※ 허가기관은 검토사항 이외 민원 등 자의적·임의적 사항을 적용하여 적합성확인을 하여서는 아니 됨

□ 서류 작성 및 검토 방법

ㅇ 제출 서류별 작성방법

서류명	작성방법
시설 및 장비 명세서	• 실제 운영중인 시설·장비*와 현행화된(변경허가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변경된 사항 반영) 허가사항을 기준으로 작성 * 규칙 별표 7(폐기물처리업의 시설·장비·기술능력의 기준)에 따른 시설·장비로 한정
기술능력 보유 현황	• 자격소지자의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, 고용관계 확인 서류(예시) 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
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	• (설치명세서) 시설의 명칭, 규격, 수량 등 작성 • (도면) 시설의 외형, 크기,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배치도 수준의 일반도면(수기 작성도 가능)
공정도	•폐기물 입고부터 처리 후 출하까지 실 공정을 작성 (수기 작성도 가능) ※ 허가증 상 공정도와 일치하는 경우 생략 가능
보관시설 현장사진	· 보관시설의 형태, 높이, 면적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
폐기물 반입량·처리량, 연간 가동일수 확인 서류	• (처분업) 폐기물 처분대장, 처분시설 운영·관리대장 등 • (재활용업)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, 재활용시설 운영·관리대장, 재활용의무대상 제품·포장재의 회수· 재활용 관리대장 등
정기검사 결과서	•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대상*인 경우 최근 정기검사 결과서 *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, 자원재활용법 제25조의 8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

ㅇ 검토방법

검토사항	검토 방법
불법 매립	• "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"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 하였는 지 여부 ※ 매립 장소는 사업장 내외 구분 없음
허가기준(시설, 장비, 기술능력) 충족여부	 현장 확인이 원칙, 다만 정기검사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최근의 정기검사 결과서 확인으로 갈음 제출한 시설 및 장비 명세서와 기술능력 보유현황이 허가증에 기재된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과의 일치 여부 검토 - 시설·장비 및 기술능력 중 규칙 별표 7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: 2개월 이내 보완 요구(2개월 내 1회 연장 가능) ⇒ 보완기간 내 미 보완 시 : 적합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검토 - 별표 7의 기준을 충족하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 :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여부 검토 및 조치(허가 또는 신고 신청, 원상회복 등) 요구 ⇒ "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 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"에 해당 • 시설의 처리능력, 정상 가동 여부, 처리 공정 등은 시설별 설치 기준(규칙 별표 9)에 맞게 설치·운영 및 관리되고 있는지를 검토 -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요청 가능 • 변경허가를 받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개·보수, 용량 변경 또는 주요 설비의 변경이 진행중인 경우, 해당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은 적합성확인 검토대상에서 제외 - 해당 시설이 시설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정상 적인 시설로 보고 검토 • 보관시설의 폐기물 보관량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중이다고 판단되는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적정 여부 검토 *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폐기물 실측 지원증
결격사유	 대표자, 임원 및 사용인이 법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: 2개월 이내 보완 요구 ⇒ 보완기간 내 미 보완 시 : 적합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검토 ※ 행정정보공동이용, 관련기관 조회,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공지 등 방법으로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
법적 책임 이행 여부	 • 허가, 신고,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조치명령, 과징금 등 법적 책임을 부여받은 경우,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 -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: 2개월 이내 보완 요구 ⇒ 보완기간 내 미 보완 시 : 적합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검토

업종별 서류 작성 예시

첨부 1

폐기물처분업 적합성 서류 작성방법 예시

① 시설 및 장비 명세서

- ※ (근거)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皿.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- 3. 검토사항 - 나. 시설 및 장비명세서
- 나. 시설 및 장비명세서
- 1) 기재내용
- 폐기물처리시설 및 보관창고 등 <u>부대시설, 수집・운반차량 및 중장비, 실험실 및 실험 장비</u> <u>별로 시설・장비명, 시설위치(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을 통한 확인)</u>, <u>시설・장비의 규모</u>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
- 규칙 [별표 5] 제6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집·운반전용차량은 규칙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 폐기물 운반차량의 개요 및 그 구비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
- 중장비 및 **수집·운반차량은 차량번호**(등록번호)가 기재되어야 한다.

※ (방법) 처리시설, 기타시설, 보관시설, 수집·운반 차량 내역 작성

- 처리시설 : 대표 폐기물명 + 처분시설 1식 방식으로 기재
- 기타시설 : 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시설종류*, 처리능력, 수량
 - * 실험실(실험기기 포함), 계량시설, 주차장, 소독시설, 불도저, 굴착기, 매립고, 등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9의 처리시설을 제외한 별표7의 시설
- 폐기물 보관시설 : 폐기물 종류별로 가로×세로×높이 × 톤/m³(비중) = 톤 기재
- 수집·운반 차량 : 차종, 대수, 차량번호, 용량(톤) 기재
- (현재 시설 용량·규격 등이 허가증과 다른 경우) 현재 기준을 토대로 일치화. 다만 변경허가, 변경신고 대상인 경우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

구 분		내 역	
처리시설	○ 51-03-01 폐합성수지류(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) 등 처분시설 1식		
시니시크	○ 51-04-01 고로슬래그 처분시설 1식		
	○ 실험실 및 실험기구	○ 불도저 또는 굴착기	
기타내서	○ 계량시설 1식	○ 매립고 측정기기 1식	
기타시설 	<i>○ 주차장 : 10대 주차</i>	○ 세차시설 : 20제곱미터	
	<i>○ 소독시설,</i>		
	○ 51-03-01 폐합성수지류(폐염회	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) : 10(m)×10(m)×2(m)	
보관시설	× 1.52톤/m³ = 304톤		
(허용보관량) ○ 51-04-01 고로슬래그 : 6(m)×6(m)×2(m) × 1.95톤/m³ = 140			
	○ 51-07-01 폐내화물 : 6(m)×6	f(m)×2(m) × 1.95톤/m³ = 140.4톤	
수집·운반 차량	○ (차종) <i>포터</i> , (대수) <i>2대</i> , (차링	F번호) 서울1234, 부산5678 (용량) 1.5톤, 2톤	

② 기술능력의 보유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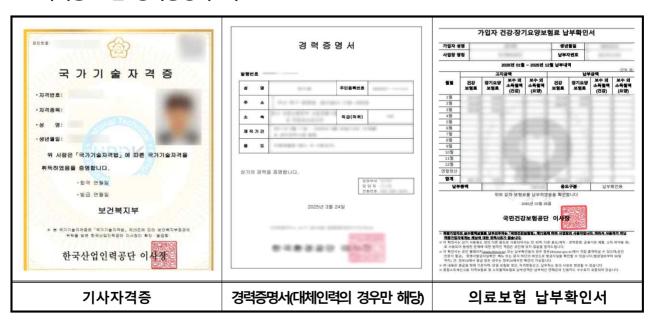
※ (근거 및 방법)

-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Ⅲ.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- [3. 검토사항 - 마.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], [4. 현지조사 - 다.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]
- 마.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- 1)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
- 기술능력 보유현황은 확보된 기술능력의 성명, 주소, 자격증현황이 기재되어야 한다.
- 구비서류는 **자격소지자의 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(대체인력의 경우만 해당)를 제출**한다.
- 4. 현지조사
- 다.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(해당되는 사항만 확인한다)
- 기술능력 : 기술 인력의 의료보험 가입 서류 등을 제출받아 실제 근무여부 확인

구 분	내 역
성 명	홍길동
주 소	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
자격증 현황	폐기물처리기사(대체인력의 경우 경력증명서)

○ 증빙자료

-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1부



③ 처분 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

※ (근거 및 방법)

-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Ⅲ.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3. 검토사항 다.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
- 다.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
- 1) 기재내용
- 각 **시설별 시설명, 시설규모(방지시설 포함)** 등 설치내역을 기재(부대시설을 포함한다.)
-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설계도면. 처분 또는 재활용 공정도. 처분 또는 재활용 과정을 설명
- 행정의 간소화 및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상세도면 보다 시설의 외형크기
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면만 요구한다.

○ 처분 시설 설치명세서

폐기물종류	재활용 시설	동력(kW or HP)	수량	일 가동시간	연간 가동일수
폐합성수지 (51-03-01) 고로슬래그 (51-04-01)	선별시설	10HP	1 EH		
	파쇄시설	10HP	1 <i>CH</i>		
	세척시설	50kW	2EH		
	<i>건조시설</i>	20HP	1 <i>EH</i>	8 <i>\\Z</i> t	250일
	용해시설	30kW	1 <i>EH</i>	0/1 <u>2</u>	230 ≧
	대기방지시설 (1차 여과집진시설)	10HP	1 <i>EH</i>		
	대기방지시설 (2차 흡수시설)	10HP	1 <i>EH</i>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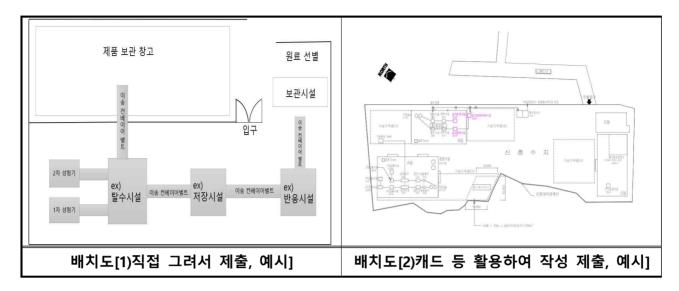
○ 개별 설비에 대한 증빙자료

- 1)처리시설에 부착된 규격 및 처리능력 현판 사진, 2)제작업체에서 제공한 규격 및 처리 능력 증빙 서류(카탈로그, 설비증명서 등), 3)증빙이 없는 경우, 제품 규격 자체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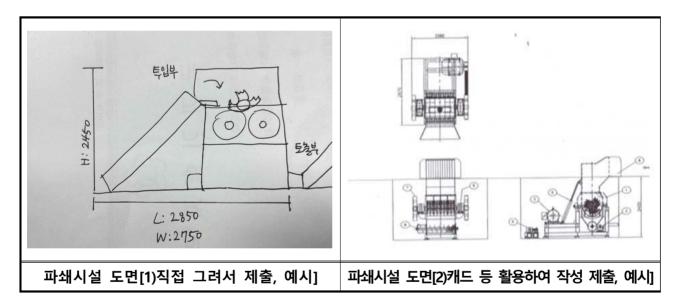


○ 도면

- 부지 내 시설 배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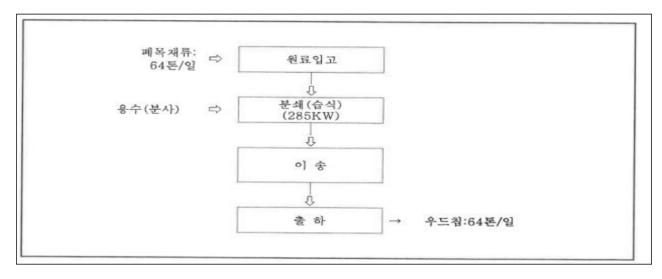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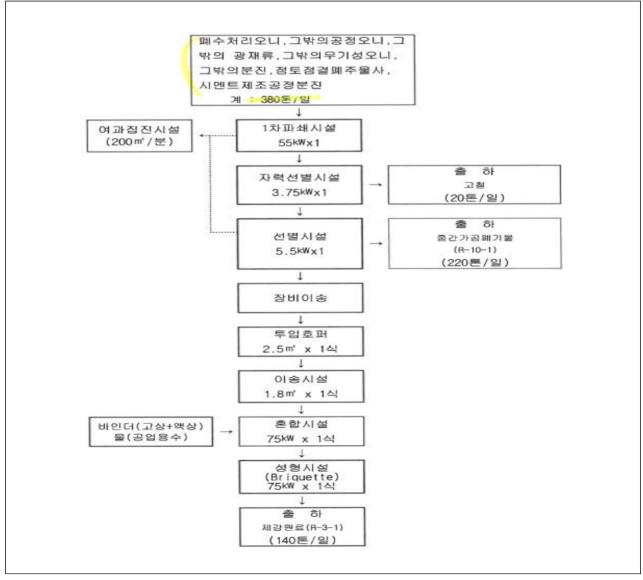
- 개별 설비별 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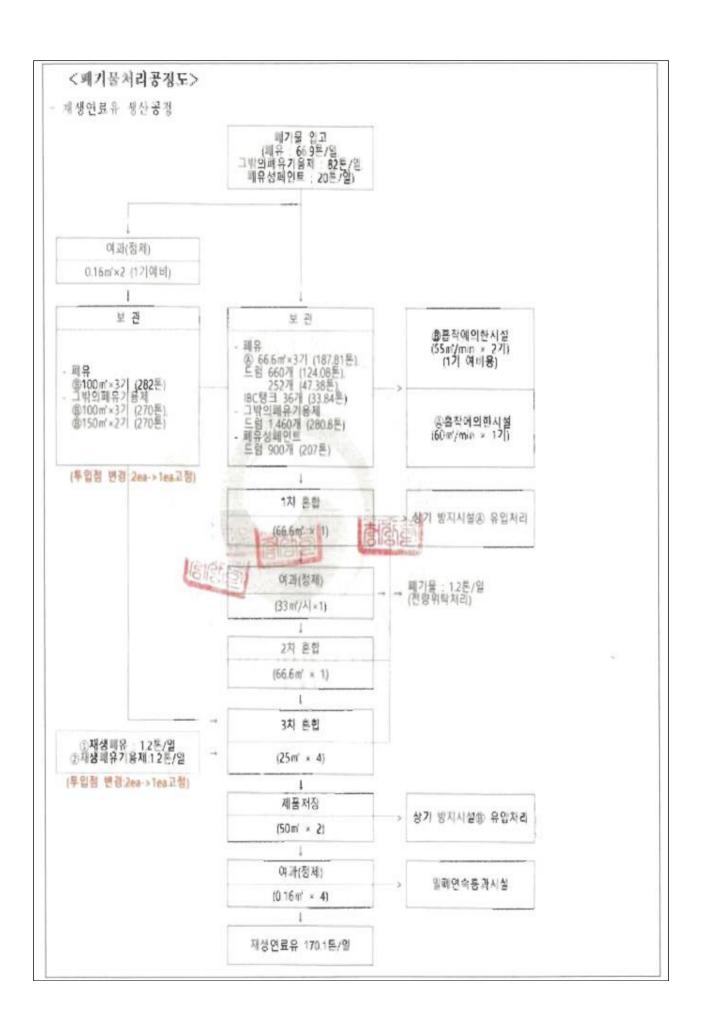


④ 처분 대상 처분공정도

※ (방법) 허가증과 공정도가 일치하는 경우 제출 생략가능, 단 허가증 공정도와 다른 경우 실 공정을 위와 같이 작성







5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

※ (근거)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- Ⅲ.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– 3. 검토사항 – 사.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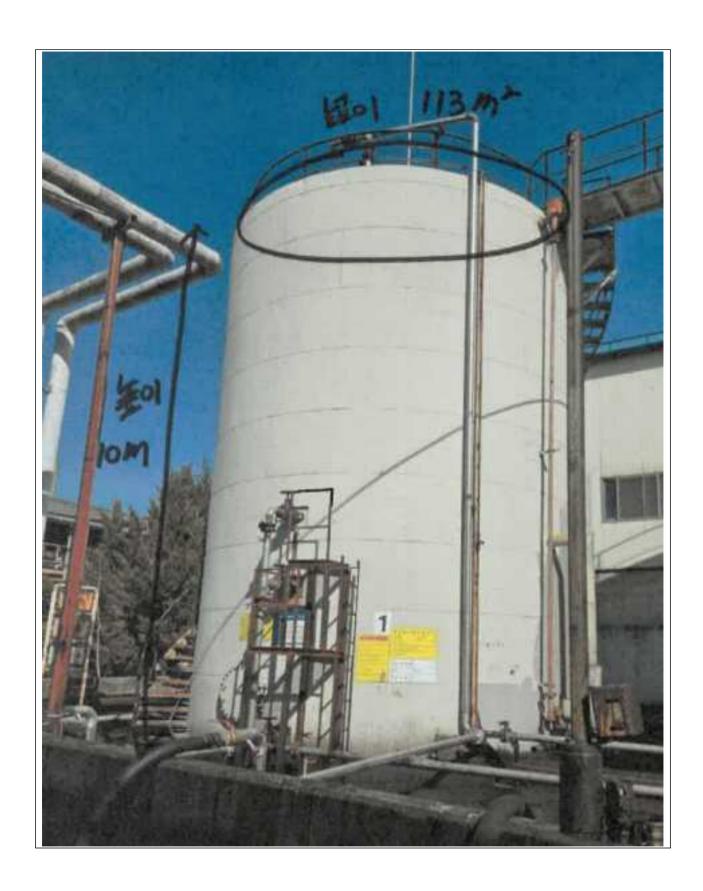
사.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- 1) 산출근거에 포함될 사항
- 보관창고의 규격: 가로×세로×높이 또는 밑면적(치수표시)×높이

※ (방법) 최근 1개월 이내 보관시설 현장사진

- 보관시설 외부전경 사진, 내부 사진을 제출하되 보관시설의 1) 가로(m) × 세로(m) × 높이(m), 2) 단면적(m²) × 높이(m)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길이를 측정하여 사진에 표시





⑤ 적합성 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·처리량 및 연간 가동 일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○ 폐기물 종류별 연간 반입량, 연간 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 작성 양식(예시)

※ 연간 반입량, 연간 처리량 : [올바로시스템] - [폐기물중간/최종/종합처분대장]에서 전년도 확인

※ 가동일수: [올바로시스템] - [폐기물중간/최종/종합처분대장]에서 처리량을 입력한 일수

구분	폐기물종류	연간 반입량	단위	연간 처리량	단위	가동일수 (일)	처리용량 (ton/일)
처분량	페콘크리트	1,548,910.000	kg	1,416,180.000	kg	13	108.94

1) 증빙서류 :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중간/최종/종합처분대장(연간 반입량,처리량)

※ [올바로시스템 로그인] - [처리자] - [폐기물중간/최종/종합처분대장] - [조회기간 '24.12.31. 날짜 변경] - [월계 탭] - [조회]

일자	폐기물종류	성상	위탁량	위탁량	위탁량누계	위탁량 누계	처리량	처리량	처리량누계	처리량 누계	보관량	보관량	폐기물 코드	최초생성일	최종생성일
2024-12-31	폐콘크리트	고상	304,920.000	kg	1,548,910.000	kg	206,620.000	kg	1,416,180.000	kg	202,130.000	kg	512201	2024-12-02	2025-01-03

2) 증빙서류 :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중간/최종/종합처분대장(연간 가동일수)

※ [올바로시스템 로그인] - [처리자] - [폐기물중간/최종/종합처분대장] - ['24.1.1. ~'24.12.31. 1개월씩 조회] - [처리내역 탭] - [조회] - [엑셀다운] - [1년취합]

* 1개월간 처리내역이 다량(500건 이상)인 경우 일괄 다운로드가 불가하므로 기간 조정하여 다운로드

1															
2	인수/처리일 자(+)	작성일자(*)	폐기물종류(+)	성상(*)	위탁자(*)	위탁자주소	위탁량	위탁량	운반자(+) -	체리방법 (*)	처리량(*)	처리량	페기물 종류	성상	연간 가동 일수
3	2024-01-09	2024-02-02	폐콘크리트	고상			0.000	kg		(1106)파 쇄/분쇄(자	24,160.000	kg	폐론크리트	고상	16
4	2024-01-09	2024-02-02	폐콘크리트	고상			0.000	kg		(1106)파 쇄/분쇄(자	25,340.000	kg			0
5	2024-01-09	2024-02-02	폐콘크리트	고상	1111	EΞ	0.000	kg	T	(1106)파 쇄/분쇄(자	19,900.000	kg			0

① 최근의 정기검사 결과서(있는 경우 제출)

○ 소각시설

202	[] 소각/<br [] 소각 [] 열권 [] 음식		[] 설치 [✔] 정기	검사결과서
	상 호(명칭)		입 중	720.7
びばい	성명(대표자)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(사무소)			
	장소			
검시	연월일		2.26 2025.01.	20
N PI	용상	검 사 대 상 시 : 30kg/hr	열 재 원 기 동 시 간	4시간/일
형식	0.0	고정화적자방식	가동방식	회문식(일괄투입식)
135 1000	모델번호	10 4	제조업소	ALC THE CITE TO
買刀	울 조성(%)	新利10% ,即位3	R80%, 베람성수지(P	E.PP) 10%
처리		1차면소실 -2차연소실 - 열심명		
	결과		합격	(항목별 검사결과 불임)
검사	STRING!			10 10 0104 031
=	기 사 항 자 의견)란	ピコピ	0 0 L	성격서의 시본은 (효력 명동)
(M)	521/16 , [] 524	30조 제1항·제2항 및 같은 법 영화수사설, [] 명균분쇄사설, []] 정기) 검사결과서를 발급합니	음식물류 폐기물 처리	

소각시설(일반) 항목별 검사결과

검사항목	세부기준	검 사 결 과
가, 척징 연소성돼, 연소실 출구 온도유지 아큐	(1) 적정한 소각기능 및 용량을 가져야 한다.	 소각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허가받은 용량 이상인지 여부를 실제 시험을 통해 확인. 형 식: 고정화격자방식 검사시간: 2시간 이상(회분식) 소각능력: 설계기준(30kg/hr) 이상임 (검사 중 폐기물 처리량: 30.12kg/hr)
	농도는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.	O 배기가스 중의 일산화탄소농도는 200
	(3)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시설별로 다음의 기준온도 이상이어야 한다. - 일반소각시설: 850℃ 이상 (200kg/hr 미만, 800℃ 이상) ※ 해당시설은 「폐기물관리법」시행규칙 부칙(환경부령 제1101호(2024.6.28.)) 제3조 및 제4조에 약거 종전규정될 때통	
나. 연소가스 체류시간	The state of the s	 ○ 면소설은 면소가소가 0.5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,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임. - 체류시간: 1.17초

검사항목	세 부 기 준	검 사 결 과
다. 바닥재 강열감량 적절 여부	(1) 바닥재의 강열감량이 다듬에서 정한 기준 이하여야 한다. - 일반소각시설: 10% 이하 다만, 2008년 1월 1일 이후 가동 개시 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5%(200 kg/hr 미만 시설은 10%) 이하	결과, 검사기준(10% 이하)을 만족함 분석결과 - (1차) 7.9%, (2차) 6.8%, (3차) 7.2%
라. 보조연소 장치의 작동상태	(1) 연소설에 폐기물을 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조연소장치나 그 밖 의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에서 정한 기준온도까지 운도를 높인 후 폐기물을 투입하여야 하고, 시설의 가동을 많을 때에는 폐 가물이 완전히 면소한 후 온도 를 낮추어야 한다. - 공통기준: 800°C 이상 - 굴뚝TMS 부착 소각시설(외료폐기물 처리시설 제외): 600°C 이상 - 종이·목재류 소각시설: 450°C 이상	되어 있으며, 정상 작동 확인함. - 점화버너(1차 연소실에 위치) - 형 식: GUN-TYPE - 명 량: 15~30kg/H - 체작사: 동우공업(주) - 면 료: 경유 - 추면소버너(2차 연소실에 위치) - 형 식: GUN-TYPE - 용 량: 15~30kg/H
마. 배기가스 운도 적절 여부	(1) 대기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 집진 시설(전기·여과집진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기·여과집 진시설로 본다)에 흘러 들어오는 연소가스를 200℃ 이하(2ton/hr 미만인 시설의 경우에는 250℃ 이하)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200kg/hr 미만인 시설로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처리공정상 연소가스의 냉각이 필요하자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	

검사항목	세부기준	검 사 결 과
바. 소 <mark>방장비</mark> 설치 및 관리설태	(1)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3에 따른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 고 자체 정검 및 작동 기능 정 검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.	
사-설치검사 당시와 동일한 설비·구 조물 유지하고 있는지	(1) 본체 및 부대설비(용수저장탱크, 조작 판별 제외)의 구조 및 행상 은 설치검사 시와 동일하여야 한 다.	○ 본제 및 부대설비의 구조, 행상은 설치검사 시와 동일항.
여부	(2) 설치검사 시와 동일한 내용을 각인한 표지를 부탁하여야 한다.	교 설치검사 시와 동일한 내용을 각인한 표지가 적정하게 부착되어 있음.
		 각 계기들의 부착위치는 설치검사 시와 동일하며, 적정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.
	(4) 계량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.	○ 해당없동(200kg/hr 미만)

첨부 2

폐기물 재활용업 적합성 서류 작성방법 예시

□ 시설 및 장비 명세서

- ※ (근거)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皿.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- 3. 검토사항 - 나. 시설 및 장비명세서
- 나. 시설 및 장비명세서
- 1) 기재내용
- 폐기물처리시설 및 보관창고 등 <u>부대시설, 수집・운반차량 및 중장비, 실험실 및 실험 장비별로 시설・장비명, 시설위치(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을 통한 확인)</u>, <u>시설・장비의 규모</u> 등이기재되어야 한다
- 규칙 [별표 5] 제6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집·운반전용차량은 규칙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 폐기물 운반차량의 개요 및 그 구비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
- 중장비 및 **수집·운반차량은 차량번호**(등록번호)가 기재되어야 한다.
- ※ (방법) 처리시설, 기타시설, 보관시설, 수집·운반 차량 내역 작성
 - 처리시설 : 대표 폐기물명 + 재활용시설 1식 방식으로 기재
 - 기타시설 : 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시설종류*, 처리능력, 수량
 - * 실험실(실험기기 포함), 계량시설, 세차시설 등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9의 처리시설을 제외한 별표7의 시설
 - 폐기물 보관시설 : 폐기물 종류별로 가로×세로×높이 × 톤/m³(비중) = 톤 기재
 - 수집·윤반 차량 : 차종, 대수, 차량번호, 용량(톤) 기재
 - ☞ (현재 시설 용량·규격 등이 허가증과 다른 경우) 현재 기준을 토대로 일치화. 다만 변경허가, 변경신고 대상인 경우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

구 분	내 역
처리시설	○ 51-03-01 폐합성수지류(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) 등 재활용시설 1식 ○ 51-04-01 고로슬래그 재활용시설 1식
기타시설	○ 세차시설: 20제곱미터 ○ 계량시설 1식 ○ 실험실 및 실험기구 ○ 불도저 또는 굴삭기
보관시설 (허용보관량)	○ 51-03-01 폐합성수지류(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) : 10(m)×10(m)×2(m) × 1.52톤/m² = 304톤 ○ 51-04-01 고로슬래그 : 6(m)×6(m)×2(m) × 1.95톤/m² = 140.4톤 ○ 51-07-01 폐내화물 : 6(m)×6(m)×2(m) × 1.95톤/m² = 140.4톤
수집·운반 차량	○ (차종) <i>포터</i> , (대수) <i>2대</i> , (차량번호) 서울1234, 부산5678 (용량) 1.5톤, 2톤

② 기술능력의 보유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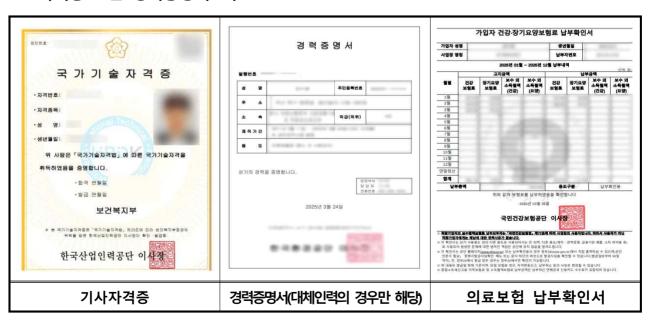
※ (근거 및 방법)

-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Ⅲ.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- [3. 검토사항 - 마.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], [4. 현지조사 - 다.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]
- 마.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- 1)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
- 기술능력 보유현황은 확보된 기술능력의 성명, 주소, 자격증현황이 기재되어야 한다.
- 구비서류는 **자격소지자의 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(대체인력의 경우만 해당)를 제출**한다.
- 4. 현지조사
- 다.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(해당되는 사항만 확인한다)
- 기술능력 : 기술 인력의 의료보험 가입 서류 등을 제출받아 실제 근무여부 확인

구 분	내 역
성 명	홍길동
주 소	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
자격증 현황	폐기물처리기사(대체인력의 경우 경력증명서)

○ 증빙자료

-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1부



③ 재활용 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

○ 재활용 시설 설치명세서

※ (근거 및 방법)

-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Ⅲ.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3. 검토사항 다.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
- 다.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
- 1) 기재내용
- 각 **시설별 시설명, 시설규모(방지시설 포함)** 등 설치내역을 기재(부대시설을 포함한다.)
- 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 설계도면, 처분 또는 재활용 공정도, 처분 또는 재활용 과정을 설명
- ※ 행정의 간소화 및 제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**가급적 상세도면 보다 시설의 외형크기**
 -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반도면만 요구한다.

폐기물종류	재활용 시설	동력(kW or HP)	수량	일 가동시간	연간 가동일수	
	선별시설	10HP	1 <i>E </i>			
폐합성수지 (51-03-01)	파쇄시설	10HP	1 EH			
(51 05 01)	세척시설	50kW	2EH			
	<i>건조시설</i>	20HP	1 <i>EH</i>	8시간	25001	
	용해시설	30kW	1 <i>EH</i>	0/1/2	250일	
고로슬래그 (51-04-01)	대기방지시설 (1차 여과집진시설)	10HP	1 <i>EH</i>			
	대기방지시설 (2차 흡수시설)	10HP	1 <i>EH</i>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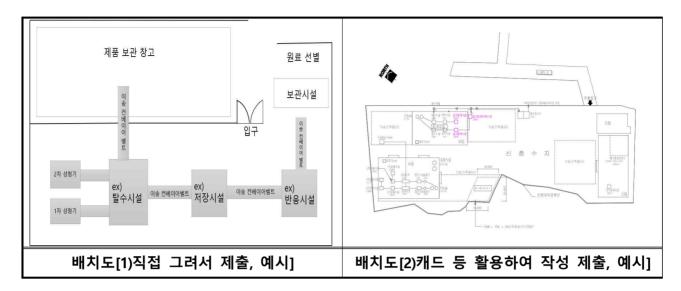
○ 개별 설비에 대한 증빙자료

- 1)처리시설에 부착된 규격 및 처리능력 현판 사진, 2)제작업체에서 제공한 규격 및 처리 능력 증빙 서류(카탈로그, 설비증명서 등), 3)증빙이 없는 경우, 제품 규격 자체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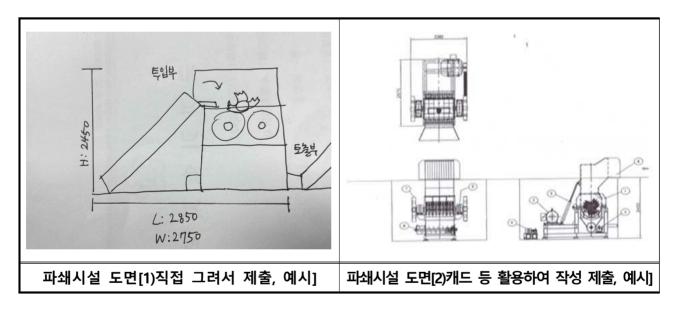


○ 도면

- 부지 내 시설 배치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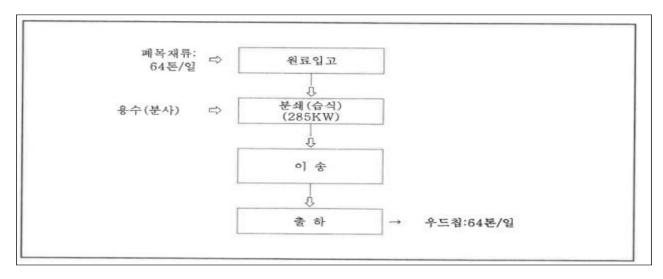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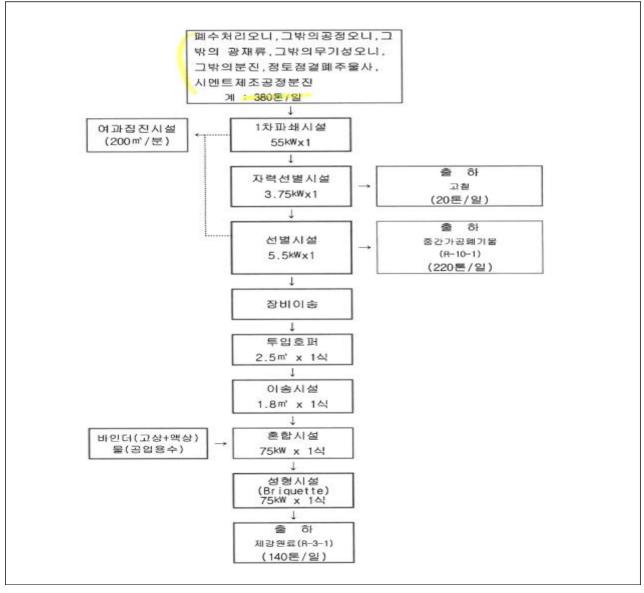
- 개별 설비별 도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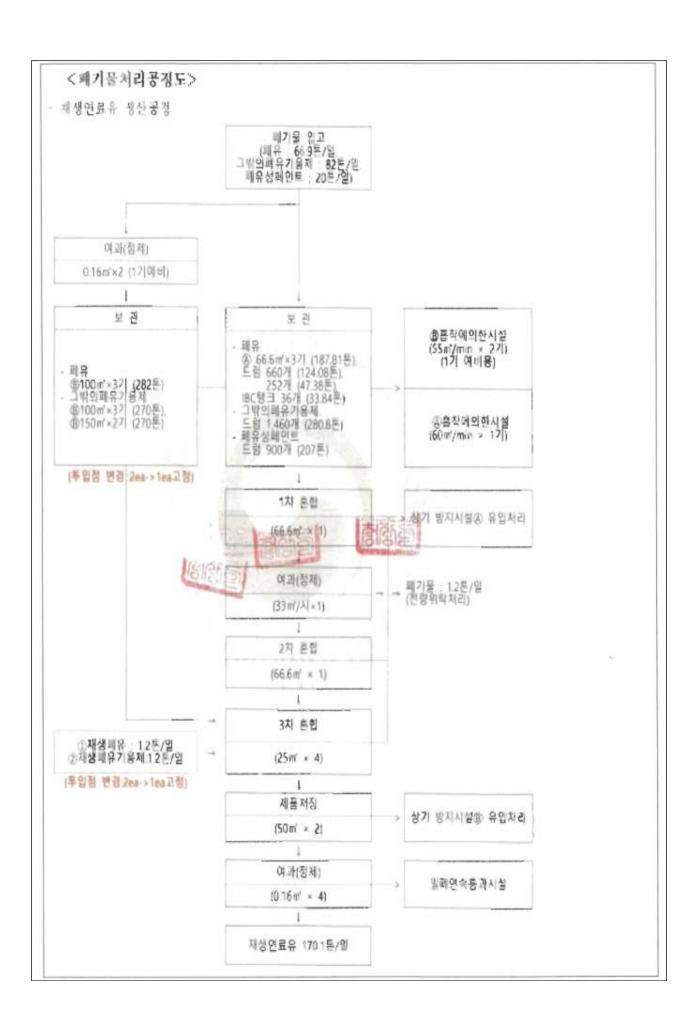


④ 재활용 대상 처분공정도

※ (방법) 허가증과 공정도가 일치하는 경우 제출 생략가능, 단 허가증 공정도와 다른 경우 실 공정을 위와 같이 작성







5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

※ (근거)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- III.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- 3. 검토사항 - 사.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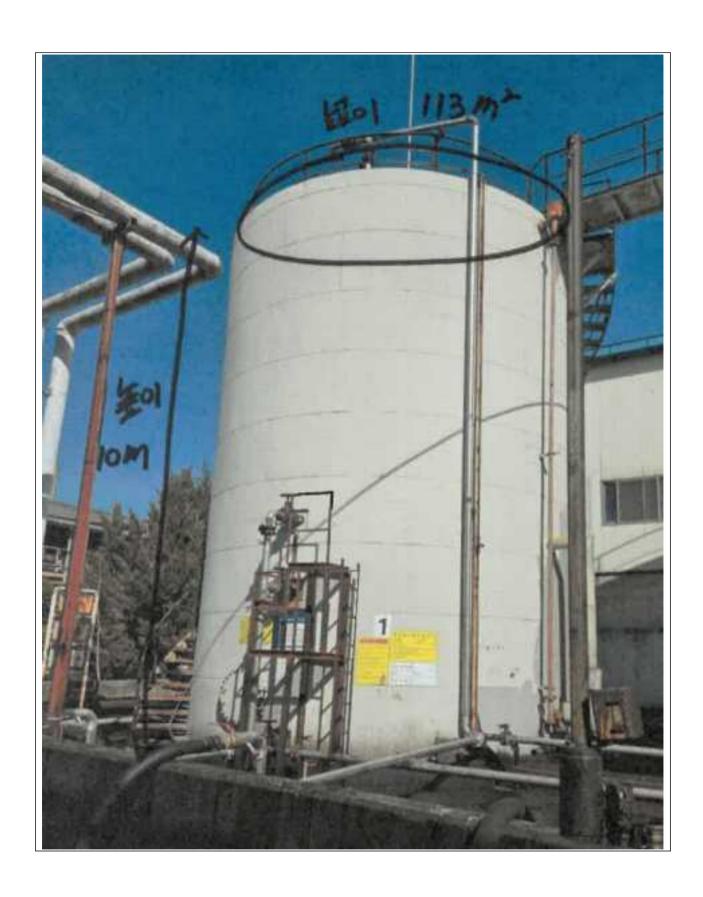
사.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- 1) 산출근거에 포함될 사항
- 보관창고의 규격 : 가로×세로×높이 또는 밑면적(치수표시)×높이

※ (방법) 최근 1개월 이내 보관시설 현장사진

- 보관시설 외부전경 사진, 내부 사진을 제출하되 보관시설의 1) 가로(m) × 세로(m) × 높이(m), 2) 단면적(m²) × 높이(m)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길이를 측정하여 사진에 표시





⑤ 적합성 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·처리량 및 연간 가동 일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○ 폐기물 종류별 연간 반입량, 연간 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 작성 양식(예시)

※ 연간 반입량, 연간 처리량 : [올바로시스템] - [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]에서 전년도 확인

※ 가동일수 : [올바로시스템] - [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]에서 처리량을 입력한 일수

구분	폐기물종류	연간 반입량	단위	연간 처리량	단위	가동일수 (일)	처리용량 (ton/일)
	그 밖의 폐유기용제	3,961,410.000	kg	4,155,810.000	kg	119	34.92
세월등등	그 밖의 폐광물유[아스팔트유·그리스 (grease)·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, 20퍼 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, 고체 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]	24, 246, 520, 000	kg	24, 215, 875, 000	kg	268	90.36
	그 밖의 폐유	6, 293, 880, 000	kg	6,361,080.000	kg	147	43.27

1) 증빙서류 :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(연간 반입량,처리량)

※ [올바로시스템 로그인] - [처리자] - [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] - [조회기간 '24.12.31. 날짜 변경] - [폐기물 월계 탭] - [조회]

일	자 폐기물종류	성삼	수집량	수집량	수집량누계	수집량 누계	재활용량	재활용 량	재활용량누계	재활용 량누계
2024-1	12-31 그 밖의 폐유기용제	맥삼	307,440.000	kg	3,961,410.000	kg	310,505.000	kg	4,155,810.000	kg
2024-	. 바치므 미 스묘서전사므 20대세	리스(grease) !트 이상의 _{매사}	2,583,990.000	kg	24,246,520.000	kg	2,626,950.000	kg	24,215,875.000	
2024-	12-31 그 밖의 폐유	맥삼	724,040.000	kg	6,293,880.000	kg	600, 250.000	kg	6,361,080.000	kg

2) 증빙서류 : 올바로시스템 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(연간 가동일수)

※ [올바로시스템 로그인] - [처리자] - [폐기물수탁재활용관리대장] - ['24.1.1. ~'24.12.31. 3개월씩 조회] - [폐기물재활용내용 탭] - [조회] - [엑셀다운] - [1년취합]

2	인수/ 재활용일자 (*)	폐기물종류(*)	폐기물 코드	성상 (*)	위탁업체 식별번호	위탁업체명	수집량	수집량	재활용 방법	페기물 재활용량	폐기물 재활용 량	페기물 종류	연간 가 동일수
- m	2024-01-01	그 밖의 폐광물유[아스팔트유 • 그라스(grease) • 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, 20퍼센트 이상 의 이물질이 황유된 폐유, 고체 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]	060199	액상	20-40-007	7- 9 *55	0.000	kg	(2010)중간가 공폐기물 제 조(재)(위탁)	1,380.000	kg	그 밖의 폐유기용제	119
4	2024-01-01	그 밖의 폐광물유[아스팔트유 •그리스(grease) • 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, 20퍼센트 이상 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, 고체 상대의 폐유 등을 말한다]	060199	액상	20-40-007	********	0.000	kg	(2010)중간가 공폐기물 제 조(재)(위탁)	21,590.000	kg	그 밖의 폐광물유[아스팔트유 • 그라스(grease) • 방청유 및 수용성절삭유, 20퍼센트 이상 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, 고 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]	268
5	2024-01-01	그 밖의 폐광물유[아스팔트유 • 그리스(grease) • 방청유 및	060199	액상	202301016	TABEL	0.000	kg	(2010)중간가 공폐기물 제	9,610.000	kg	그 밖의 폐유	147

① 최근의 정기검사 결과서(있는 경우 제출)

○ SRF제조시설

제 202	24-A-234 호			
	[\] :	고형연료제품 제조시	The second secon	검사 결과서
	[]:	고형연료제품 사용시		371 <u>2</u> – 171
	상호		사업자등록번호	
신청인	성명(대표자)		생년월일	
	시설 소재지			
겉	사 연월일	2024년 10월	07일 ~ 2024년	년 10월 0 8 일
다음	정기검사 기간	2025년 07월	13일 ~ 2025년	년 10월 12일
ŧ	검사 장소			
		검사대상 시설	제원(諸元)	
제조 · 사용 용량		18,000 톤/년	가동시간	20 (시간/일)
		10,000 2/6	연간가동일수	300 (일)
제조	· 사용 연료	일반고형연료제품 (성형)	,	
제조	사용 공정	투입 → 파쇄 → 분쇄 → 자	력선별 → 압출·성형	→ 제품(일반SRF_성형)
	검사결과	합격		(항목별 검사결과 붙임)
	특기사항			
에따	라 위와 같이 고향	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5조: 형연료제품 제조시설·사용시설에 서를 발급합니다. 2024 년 10 월	대한 정기검사 ([【시행규칙 제20조의9제3항 】최초검사, [√]계속검사,
		폐자원에너지		

□ 제조시설 항목별 검사결과

O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·사용시설 공통의 검사방법

	검 사 기 준	검 사 결 과	판	정
가.	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가물의 투압저장이송 등의 과정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시설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는 구조일 것	O 제조시설 콘크리트 포장구조로 투입, 저장, 이송 과정 중 침출수 외부 유출 및 지하 침투 우려 없음	적	합
4.	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설비가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	O 시설이나 설비가 부식 또는 파손 없음 - 방청 페인트 도색으로 부식방지 등	적	합
다.	폐기물 또는 먼지 등의 비산飛動이 우려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먼지 등을 포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	O 여과집진시설 등 설치를 통한 먼지(분진) 등 비산 방지	적	합
라.		O 화재발생에 대비한 방재설비를 갖추고 있음 - 소화기, P형 수발신기, 살수기, CCTV, 불꽃감지기 등	적	합
마.	해충의 발생이나 유입유출을 병주할 수 있는 구조일 것	O 자체 방역을 실시하여 해충발생 등 방지	적	합
	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 또는 아스팔 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3 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구조 물(사일로, 지하피트 등)일 것		적	합
2)	서로 다른 종류의 고형연료제품이거나 같은 종류라도 서로 다른 제조시설에서의 제조된 고형연료제품을 함께 보관하는 경우 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구획을 나누어 보관하거나 칸막이 등을 설치할 것	O 고형연료제품(일반 SRF 비성형) 생산 및 별도 보관	적	합
3)	시설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고형 연료제품을 신속하게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비활성기체 주입장치 등 발화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	O 차량진입 및 크레인 작업 등을 위한 여유공간 확보로 신속한 외부반출이 가능한 구조	적	합
4)	시설 내부의 온도 및 상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 기록 보관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. 다만, 환기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에는 온도 및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 기록 보관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.	O 환기가 가능한 구조의 보관시설	적	합
5)		O 자체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/반출량 측정 - 검정업체 :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- 검 정 일 : 2023년 03월 28일	적	합
1)	고형연료제품의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「악취방지법」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감할 수 있을 것 폐기물 및 고형연료제품은 보관과정에서 발생 하는 약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 창고에 보관하거나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악취는 배출구, 부지경계선 등 2곳 이상의 장소에서 측정한다.	○ 약취 검사결과[기타지역] 구 분 배출허용기준 검사결과 부지경계선(정문) 15 3 부지경계선(측면) 15 3	적	합

O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검사방법

검사 기준	검 사 결 과	판 정
「폐기물관리법」제25조제3항 및 같은 조제5항제6호·제7호에 따른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의 시설기준을 충족하고, 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능용량을 갖추고 있을 것	○ 제조신고(예정)용량: 80.0톤/일(8시간, 10.0톤/시간) ○ 시설점검결과: 적 합 1) 검사기준 - 시간당 제품생산량이 시간당 제조신고(예정)의 70%이상 2) 검사내용: 3시간 가동 투입 제품 생산량 잔재물 접출 (제조용량비율) 27.640톤 24.960톤 92.13 8.320 본/시간 톤/시간 2.680톤 90.3% 제조신고(예정)량의 83.2% ○ 품질기준 검사결과: 적 합(2025-QC-1-A-1165)갈음	적 합
나. 계량시설 제조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다만 외부 공인계량소에서 계량하여 계량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	O 자체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반입량 측정 - 검정업체 :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- 검 정 일 : 2023년 03월 28일	적 합
다. 반입시설 폐기물 수집·운반차량을 통한 폐기물 반입 작업이 용이한 구조일 것	 여유공간 확보로 폐기물 반입 및 하차가 용이한 구조 	적 합
라. 저장시설 1) 제조시설 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경우 휴일 및 시설 가동중지일 등을 고려하여 「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7 제5호에 따른 최소 10일분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고 있을 것. 다만, 제조시설 외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	○ 폐기물 저장시설은 적정한 저장용량을 갖춤 - 폐기물 저장용량 : 2,680톤	적 합
2) 자체하중(自體荷重), 적재하중(積載荷重), 지진력(地震力) 및 온도응력(溫度應力)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일 것	O 건축물 허가사항 확인 - 일반철골구조 등	적 합
3) 저정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정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	O 자체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저장량 측정	적 합
마. 투입시설 1) 일정량의 폐기물을 시설 내부에 연속적 으로 투입·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	○ 연속적으로 투입·조절할 수 있는 구조임 - 투입크레인 및 제어설비에 의한 투입량 조절	적 합
2) 투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 되어 있을 것	O 자체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투입량 측정	적 합
바. 이송시설	○ 컨베이어 설비를 이용하여 연속적 이송가능 ○ 시험시간동안 넘침 발생 없음 - Conveyor 이송 속도조절장치 가동정지 버튼으로 조정	적 합
 페기물 및 고형연료제품의 이송과정에서 유기물 부착, 정체, 낌, 탈리(脫離) 등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	O 이송과정 중 부착, <mark>정체</mark> , 낌, 탈리 등의 <mark>발생</mark> 없음	적 합
사. 파쇄·분쇄·절단시설 1) 파쇄분쇄절단시설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폐기물을 정량 투입할 수 있는 구조일 것	○ 이물질에 의한 손상방지 및 비상정지 기능 보유○ 투입량 조절을 통한 처리용량 이내 투입가능 구조	적 합

	검 사 기 준	검 사 결 과	판 정
DF.	선별시설		
	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선별(입도선별, 풍력선별, 자력 선별, 비철금속선별, 광학선별 등)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	○ 선별시설[자력, 입도, 풍력]을 갖추고 있음 ○ 선별률 : 9.7 %	적 합
2)	선별된 후 발생되는 불연물 등의 잔재 물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	O 자체 계량시설을 이용하여 잔재물량 측정	적 합
자.	건조시설	O 해당사항 없음	
1)	필요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열 장치 및 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		
2)	시설 내부의 가스온도를 측정·기록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		
3)	시설 외부의 표면온도를 80℃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 외부를 내열도료 (塗料)로 도색하거나 단열처리 하였을 것		
4)	배기구로부터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처리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		
자.	성형시설	O 해당사항 없음	
1)	별표 7에 따른 품질기준 중 모양 및 크기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 는 구조일 것		
2)	성형을 마친 고형연료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		
71.	포장시설	O 해당사항 없음	
1)	고형연료제품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		
2)	고형연료제품의 단위 포장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		
타.	환경오염 방지시설		
1)	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오염물질 등을 「대기 환경보전법」및 「물환경보전법」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을 것	○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신고(5종): 먼지 등 - 여과집진시설(130m³/min, 200m³/min, 300m³/min) 설치 운영 ○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비대상(해당사항 없음)	적 합
2)	고형연료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「소음・진동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	O 소음 검사결과[계획관리지역]	
	공장 소음·진동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저	구 분 기준 <u>부지경계선(dB)</u> 평 균 (dB) 1 2 3 소음도	적 합
	감할 수 있을 것	소음측정결과 60 59.3 49.3 62.1 57(dB)	

□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검사결과 [적 합]

- 사업장명 : (주)더엘

- 제품종류 : 일반 고형연료제품[SRF(Solid Refuse Fuel)] 비성형

- 품질기준 분석결과

시험항목		ਜ2	격기준	시험결과	비고	
-0.0.	가로(mm)	50 이하	체통과율	체통과율 100%	W 30	
모양 및 크기	세로(mm)	50 이하	95% 이상		적 합	
발열량(k	cal/kg)	3,500 이상		4,450	적 합	
수분 함유	량(wt, %)	25	이하	14	적 합	
	수은(Hg)	1.0	이하	0.0	적 합	
금속성분	카드뮴(Cd)	5.0 이하 150 이하		불검출	적 합	
(mg/kg,건기준)	납(Pb)			불검출	적 합	
	비소(As)	13.0	이하	불검출	적 합	
회분 함유	량(wt, %)	20 이하		1	적 합	
염소 함유	량(wt, %)	2.0 이하		0.1	적 합	
황분 함유	량(wt, %)	0.6 이하		0.5	적 합	

※ 품질기준 검사결과 적합 여부는 품질확인검사 결과로 갈음 함

- 관련근거
 - 1. 환경부고시 제2020-218호(2020.10.27.) [별표1] 제2호 가, 1), 다목
 - 2. 토양폐기물분석부 372(2025.2.25)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시료 분석결과 알림
 - 「고형연료 품질확인검사 2025-QC-1-A-1165」

첨부 3

수집·운반업 적합성 서류 작성방법 예시

① 시설 및 장비 명세서

- ※ (근거)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Ⅲ.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– 3. 검토사항 – 나. 시설 및 장비명세서
- 나. 시설 및 장비명세서
- 1) 기재내용
- 폐기물처리시설 및 보관창고 등 <u>부대시설, 수집・운반차량 및 중장비, 실험실 및 실험 장비</u> <u>별로 시설・장비명, 시설위치(지적도 또는 위성사진 등을 통한 확인)</u>, <u>시설・장비의 규모</u>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
- 규칙 [별표 5] 제6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집·운반전용차량은 규칙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른 폐기물 운반차량의 개요 및 그 구비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.
- 중장비 및 **수집·운반차량은 차량번호**(등록번호)가 기재되어야 한다.

※ (방법) 기타시설, 보관시설, 수집·운반 차량 내역 작성

- 기타시설 : 처리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시설종류*, 처리능력, 수량
- * 주차장, 세차시설, 약물소독장비 등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9의 처리시설을 제외한 별표7의 시설
- 임시 보관시설 : 임시 보관장소가 있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가로×세로×높이 x 톤/m³(비중) = 톤 기재
- 수집·운반 차량 : 차종, 대수, 차량번호, 용량(톤) 기재
- ☞ (현재 시설 용량·규격 등이 허가증과 다른 경우) 현재 기준을 토대로 일치화. 다만 변경허가, 변경신고 대상인 경우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임

구 분	내 역
기타시설	○ 주차장 : 10대 주차○ 세차시설 : 20제곱미터○ 약물소독장비 1식
임시 보관시설 (허용보관량)	○ 51-03-01 폐합성수지류(폐염화비닐수지류는 제외한다) : 10(m)×10(m)×2(m) × 1.52톤/m' = 304톤
수집·운반 차량	 ○ (차종) <i>냉장차량</i> (대수) 1대 (차량번호) 부산5678 (용량) 1톤 ○ (차종) <i>탱크로리</i> (대수) 1대 (차량번호) 부산1234 (용량) 5톤 ○ (차종) <i>밀폐형 차량</i> (대수) 1대 (차량번호) 인천1234 (용량) 5톤

② 기술능력의 보유현황

※ (근거 및 방법)

-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Ⅲ. 허가신청서류 검토 및 허가 - [3. 검토사항 - 마.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], [4. 현지조사 - 다.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]
- 마.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
- 1) 기재내용 및 구비서류
- 기술능력 보유현황은 확보된 기술능력의 성명, 주소, 자격증현황이 기재되어야 한다.
- 구비서류는 **자격소지자의 자격증 사본, 경력증명서(대체인력의 경우만 해당)를 제출**한다.
- 4. 현지조사
- 다. 현지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(해당되는 사항만 확인한다)
- 기술능력 : 기술 인력의 의료보험 가입 서류 등을 제출받아 실제 근무여부 확인

구 분	내 역
성 명	홍길동
주 소	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
자격증 현황	폐기물처리기사(대체인력의 경우 경력증명서)

○ 증빙자료

-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1부

